

1. 개정이유

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항공사 간 운항시각의 이전은 허용하지 않으면서,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따라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통합사에서 대체사로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, 이때 통합사의 갑작스런 운항 중단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, 외국과의 항공협정 내용에 따라 대체사의 신규 취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, 이용자 편의와 항공협정 내 대체사 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 허용(안 제11조의3 신설)

항공사 기업결합으로 부과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인한 특정 항공사의 운항중단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 불편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시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을 허용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운항시각 조정·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운항시각 조정·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3. 제11조의3에 따라 따라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·배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계열회사 간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·배분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·배분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조정·배분할 수 있다.

1.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사 또는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항공협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운항시각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4조(운항시각정책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
1. ~ 4의2. (생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4의3. 제11조의3에 따라 따라 <u>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·배</u> <u>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</u>
5. ~ 7. (생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제11조의3(계열회사 간 반납된 운 <u>항시각의 조정·배분) 국토교통</u> <u>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1호</u> <u>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운항시</u> <u>각이 반납됨에 따라 다음 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에는 해당 운항시각을 제10조</u> <u>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</u> <u>조정·배분 방법 및 절차를 정</u> <u>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</u> <u>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에 따</u> <u>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항</u>

	<u>공운송사업자 간에 조정·배분할 수 있다.</u> <u>1.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항공사 또는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<u>2. 항공협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을 하기 어려운 경우</u>
--	--